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문경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1. 5.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19건	11	8	2	66,159	2	267,657	3	345,443
1	○ ○ 과	보건소장 임용 및 과장전보 등 인사운영 부적정(기관경고)	1	-	-	-	-	-	-	-
2	○ ○ 과	명예퇴직 후 재임용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1	-	1	56,324	-	-	-	-
3	○ ○ 과	교육파견 별도정원 관리 소홀	-	1	-	-	-	-	-	-
4	○ ○ 과	질병휴직 관리 및 휴직자 복무관리 소홀	1	-	1	9,835	-	-	-	-
5	○ ○ 과	문경시 장학회 지정기탁금 접수 방법 부적정(기관경고)	-	1	-	-	-	-	-	-
6	■ ■ ■ ■ 실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부적정	1	-	-	-	-	-	1	95,489
7	△ △ △ △ 과 ▲ ▲ ▲ ▲ 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 미이행	1	-	-	-	-	-	1	14,900
8	▽ ▽ 읍면면 ▼ ▼ 읍면면 ◁ ▷ 읍면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1	-	-	-	-	-	1	235,054
9	◀ ▶ ▶ ▶ 과	제한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	1	-	-	-	-	-	-
10	▷ ▶ 과	연접지역 개발행위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1	-	-	-	-	-	-
11	▶ ▶ ▶ ▶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소홀	-	1	-	-	-	-	-	-
12	♠ ♠ ♠ ♠ 과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 부적정	-	1	-	-	-	-	-	-
13	▲ ▲ ▲ ▲ 과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미이행	-	1	-	-	-	-	-	-
14	♠ ♠ ♠ ♠ 과	특정도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부적정	1	-	-	-	-	-	-	-
15	♠ ♠ ♠ ♠ 과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	-	-	1	12,457	-	-
16	◀ ▶ ▶ ▶ 과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	-	-	1	255,200	-	-
17	♡ ♡ ♡ ♡ 과	○○○○○ ○○○○ ○○○○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1	-	-	-	-	-	-
18	♥ ♥ ♥ ♥ 과 ◎ ◎ ◎ ◎ ◎ 과	//////////////// 증축공사 추진 부적정	1	-	-	-	-	-	-	-
19	◎ ◎ ◎ ◎ ◎ 과	◆◆◆◆◆ ◆◆◆◆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1	-	-	-	-	-	-	-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 · 시 정 요 구

제 목 보건소장 임용 및 과장전보 등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및 과장 및 읍면장의 전보, 승진직렬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등 인사업무를 총괄운영하고 있다.

1. 보건소장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문경시 직무대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장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법정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법정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정대리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2017. 9. 1.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보건소장의 궐원이 있을 경우 직제상 법정대리 순위에 있으며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방●●사무관 AAA 및 지방○○사무관 BBB를 법정대리 하도록 하여야 했다.

성 명	직 급	기 간	비 고
CCC	◆◆◆◆5급	2021.01.01. ~ 현재	
DDD	◇◇5급	2020.01.01. ~ 2020.12.31.	
BBB	◎◎5급	2019.07.01. ~ 2019.12.31.	보건사업과장 법정대리
EEE	◇◇5급	2017.07.01. ~ 2019.06.30.	
FFF	◇◇5급	2017.01.01. ~ 2017.06.30.	
GGG	◎◎5급	2016.07.01. ~ 2016.12.31.	
HHH	◇◇5급	2015.07.01. ~ 2016.06.30.	
JJJ	◇◇5급	2015.04.01. ~ 2015.06.30.	
KKK	◇◇5급	2014.09.27. ~ 2015.03.31.	
LLL	◇◇5급	2014.07.01. ~ 2014.09.26.	
MMM	◇◇5급	2014.01.01. ~ 2014.06.30.	
NNN	●●5급	2011.01.03. ~ 2013.12.31.	

1) 2013. 12. 31. 지방●●사무관 NNN 퇴직 이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지역보전법」을 위반하여 지방◇◇사무관, 지방◆◆◆◆사무관 등을 임용

2019. 7. 1. 지방◇◇사무관 EEE의 승진 후속으로 발생한 보건소장 꺾원에 보건소장의 직제상 법정대리 순위에 있으며 당시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방◎◎사무관 BBB(2017. 7. 8. 사무관승진 지정대리 불가)를 법정대리 요건이 충족하여 보건소장의 법정대리 운영이 가능함에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없어 보건소장으로 임용함이 부적합한 지방◇◇사무관 DDD(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한 근무경험 없음, 최근 5년간 ☒☒☒☒☒과, ☐☐☐☐과, ◆◆◆장, ▲▲▲▲과견, ㉠㉠㉠㉠장에 근무)를 2021. 1. 1. ▲▲▲▲▲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지정대리로 임명하여 보건소장에 임용하였다.

또한 2021. 1. 1. 지방◇◇사무관 DDD의 ▲▲▲▲▲장 승진에 따른 보건소장 꺾원에 보건소장의 직제상 법정대리 순위에 있으며 당시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방◎◎사무관 BBB(2017. 7. 8. 사무관승진 지정대리 불가)를 법정대리 요건이 충족하여 보건소장의 법정대리 운영이 가능함에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없어 보건소장으로 임용함이 부적합한 지방◆◆◆◆사무관 CCC(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한 근무경험 없음, 최근 5년간 ♥♥♥동장, ☒☒☒☒과장에 근무)를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지정대리로 임명하여 보건소장에 임용하고 있는 등 2017. 7. 1.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보건법령」을 위반하여 임용할 수 없는 지방◇◇사무관 EEE, DDD, 지방◆◆◆◆사무관 CCC를 지정대리로 지정하여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였다.

2. 과장급 직위 직렬불부합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 [표 2]와 같이 ㉠소장 등 8개의 5급 이상 직위에 대하여 [표 2]의 직위정원과 같이 해당 공무원의 종류만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11회에 걸쳐 8개 5급 이상 직위에 대하여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직위정원에 적합한 공무원의 종류를 임용하여야 했다.

[표 2] 5급이상 직렬불부합 운영 현황

연번	소속	발령일자	직위정원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불부합 대상자			불부합 기간
				직위	직급	성명	
1	●●소	2017-07-01	□□4+일반임기제	소장	◇◇5급	EEE	2017.07.01.~2019.06.30.
2	●●소	2020-01-01	□□4+일반임기제	소장	◇◇5급	DDD	2020.01.01.~2020.12.31.
3	●●소	2021-01-01	□□4+일반임기제	소장	◆◆◆◆5급	CCC	2021.01.01.~현재
4	●●소 ○○○○과	2019-01-09	◇◇5+●●5+ ☆☆☆☆5+◎◎5	과장	◆◆◆◆5급	OOO	2019.01.09.~2019.06.30.
5	■■■■소 ■■■■소	2019-07-01	◇◇5+■■5+ ▲▲5+★★5	소장	▽▽5급	PPP	2019.07.01.~2019.12.31.
6		2020-01-01			△△6급	QQQ	2020.01.01.~2020.06.30.
7	◁△면	2016-10-18	◇◇5+△△5+★★5	면장	▼▼▼▼5급	RRR	2016.10.18.~2019.12.31.
8	◀△면	2017-01-01	◇◇5+△△5+★★5	면장	▲▲5급	SSS	2017.01.01.~2017.12.31.
9	▷△면	2019-01-01	◇◇5+△△5+■■5	면장	★★5급	TTT	2019.01.01.~2019.06.30.
10	♡♡♡동	2019-07-01	◇◇5+★★5	동장	◆◆◆◆5급	CCC	2019.07.01.~2020.12.31.
11	♥♥♥동	2017-01-01	◇◇5+★★5	동장	◆◆◆◆5급	OOO	2017.01.01.~2019.01.08.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2016. 10. 18.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직위정원에 적합하지 않아 임용할 수 없는 지방◇◇사무관 EEE 등 5급 이상 공무원 11명을 ●●소장 등으로 임용하여 직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인사운영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문경시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기관경고)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③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장을 적정하게 임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명예퇴직 후 재임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미환수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2019. 12. 30. 지방●●사무관 AB를 명예퇴직 발령하였고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68,154천 원을 지급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4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은 아래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기준[별표 3]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까지의 5년초과 10년 이내의 경과일수/2)}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2019. 12. 30.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수당 68,154천 원을 수령한 문경시 ○○○○○과장 지방●●사무관 AB가 2020. 8. 10.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기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하여야 했다.

전 ○○○○과장 AB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산정 결과

68,154,150천 원 - [임기제 채용 전까지 수당(2020. 1. 1. ~ 2020. 8. 9.)(1,622,718 × 7개월) + (1622,718/31일 × 9일0) = 56,324,010원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과장 지방●●사무관 AB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라 2019. 12. 27.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결정하였고, 2019. 12. 30. 명예퇴직 처리하며 68,154천 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전 ○○○○과장 지방●●사무관 AB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2020. 8. 10. 지방◇◇◇◇◇(일반임기제) ◆◆◆◆◆소장으로 임용되었다.

이에 따라 위 부서에서는 상기 대상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56,324천 원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환수하지 않는 등 명예퇴직 수당 환수 업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56,324천 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교육과전 별도정원 관리 소홀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6급 AC(◇◇7급 → ◇◇6급 근속승진)등 ◇◇6급 3명과 □□6급 1명을 2020년도 ●●●●●●●●원 ○○○○○○○○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과전하고 2020. 2. 24.부터 2020. 12. 18.까지 별도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VI. 승진임용 2.근속승진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승진, 전출,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으로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의 충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한 AC(◇◇7급 정원)를 2020. 2. 24. ○○○○○○○○과정 교육대상자로 파견하며 후속 별도

정원을 ◇◇6급 근속당시의 계급인 ◇◇7급을 결원으로 보아 ◇◇7급을 후속 승진토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년도 ○○○○○○○과정 교육대상자로 ◇◇6급 AC, ◇◇6급 AD, ◇◇6급 AE, □□6급 AF 등 4명을 선정하여 2020. 2. 24. 교육 파견하며 파견에 따른 ◇◇6급 3명, □□6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보아 후속으로 ◇◇7급 AG, ◇◇7급 AH, ◇◇7급 AI, □□7급 AJ를 6급으로 승진 발령하였으나,

◇◇6급 AC는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여 ◇◇7급의 정원이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어 ◇◇6급을 승진시킬 수 없었음에도, ◇◇6급 AC의 교육파견 후속으로 ◇◇7급을 ◇◇6급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교육파견에 따른 별도정원을 소홀히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질병휴직 관리 및 휴직자 복무관리 소홀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2018. 1. 1.부터 현재까지 불임·난임 소견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에 대하여 질병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IX.신분 및 권익보장 1. 휴직제도 운영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질병휴직의 요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증빙서류로 ①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②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휴직여부를 결정하며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첨부하여 매 분기별로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복무상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질병휴직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 받아 공무원의 휴직 사유 소멸 여부를 관리 하여야 했고, 지방○○

주사보 AK 등 3명은 질병휴직 사유가 소멸되고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동 지방○○주사보 AK는 2018. 1. 1. 질병(난임)휴직 시작 후 2018. 5. 14. 임신사실을 확인하였으나 2018. 10. 1. 복직하였고, ♥♥♥♥과 지방 ◇◇서기 AL은 2019. 1. 1. 질병(난임)휴직 시작 후 2019. 4. 13. 임신사실을 확인하였으나 2019. 7. 1. 복직하였으며, □□과 지방◆◆주사보 AM은 2019. 11. 1. 질병(난임)휴직 시작 후 2020. 2. 27. 임신사실을 확인하였으나 2020. 5. 1. 복직하는 등, 질병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인 문경시장에게 질병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표]와 같이 30일을 초과하여 복직하였다.

[표] 질병휴직초과사용 및 휴직급여 환수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질병휴직기간	임신사실 확 인 일	휴 직 복직일	의 무 복직일	초 과 사용일	휴직급여 환수금액(원)
합 계								9,835,800
●●●동	○○○7	AK	'18.1.1.~9.30.	'18.5.14.	'18.10.1.	'18.6.14.	3개월 17일	5,788,900
♥♥♥♥과	◇◇8	AL	'19.1.1.~6.30.	'19.4.13.	'19.7.1.	'19.5.13.	1개월 1일	2,268,440
□□과	◆◆7	AM	'19.11.1.~'20.4.30.	'20.2.27.	'20.5.1.	'20.3.27.	1개월 4일	1,778,460

또한 문경시 ○○과에서는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 복무사항 신고서를 제출받아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2021. 2. 26. 감사일 현재까지 휴직자에 대한 복무사항 신고서를 제출 받지 않는 등 휴직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잘못 지급된 질병휴직 급여 9,835천 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 · 주 의 요 구

제 목 문경시 장학회 지정기탁금 접수 방법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문경시▲▲▲(재) 법인을 설립하여 재단사무국의 기부금 및 기탁금 접수 업무를 문경시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으며,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라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발적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2014. 1. 1. 이후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현금수령)하려고 하는 경우, 자발적 기탁금을 기탁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기탁서를 제출받고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기탁이 승인되면 접수(현금수령)하여야 하며,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현금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2. 12. 31.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법인 문경시 ▲▲▲ 시행세칙(2013. 9. 25.시행)」을 만들고 재단법인 문경시▲▲▲ 사무국장을 문경시청 ○○과장으로 하며 문경시청 공무원을 사무국직원으로 장학회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국 업무를 문경시청 직원이 처리하고 있으며,

2014. 1. 1.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1,000여 명의 자발적 기탁자에 대하여 ‘지정기탁서’를 제출 받지 않고 ‘후원가입 신청서’를 제출 받은 후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지정계좌로 계좌입금 받아 다음연도에 사후 일괄심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자발적기탁금 규정에 맞지 않게 2,273,554천 원 (2014. 1. 1. ~ 2020. 12. 31. 접수금액)을 접수(현금의 수령)하였고,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4. 1. 1.부터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자발적기탁금 접수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지정기탁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문경시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기관경고)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실
내 용

문경시 ■■■■■실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에 대해 소송총괄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신청사건, 민사·행정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수결정 및 채권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실에서는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 대하여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8. 7. 5.부터 2020. 12. 10.까지 최종 승소한 8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95,489천 원을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고도,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승소 후 소송비용 미 청구 및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미 신청 내역

연번	사 건 명	사건번호	원고	담당부서	소송종결일	소송비용(원)	비 고
합 계(8건)				5개 부서		95,489,573	
소 계(4건)						9,109,863	소송비용 미청구
1	손해배상	-	-	☞☞☞☞과	2018.07.05.	2,507,463	
2	정정보도청구	-	-	☞☞☞☞과	2019.05.03.	1,276,183	
3	건물명도청구	-	-	□□과	2019.05.22.	1,609,939	
4	정정보도청구	-	-	♥♥♥♥과	2019.11.13.	3,716,278	소 송 비용액 확정결정 미신청
소 계(4건)						86,379,710	
5	손해배상청구	-	-	♠♠♠♠과	2020.03.12.	14,331,500	
6	간접비 청구	-	-	▽▽▽▽과	2020.05.04.	27,231,500	
7	- 통보 취소	-	-	♠♠♠♠과	2020.11.3.	4,421,300	
8	손해배상(기)	-	-	☞☞☞☞과	2020.12.10.	40,395,410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의 등록·신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업자가 종업원 명부 비치·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에 따라 10만 원(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등은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20만 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유흥주점업자가 종업원 명부 비치·기록 및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통보되었거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불참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문경시 ○○로 000-0에 소재한 ●●●●●●(대표자 AN)이 2019. 9. 24. “식품위생법 위반”(종업원 명부 미비치)으로 적발되어 2019. 9. 26. 문경경찰서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이 공문 통보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 (100천 원)를 미부과 하였다.

[표 1]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 통보내역

구 분	적발일시	상 호	주 소	대표자	공문접수 문서번호
문경경찰서 (○○과-4107)	2019.9.24. 03:00경	●●●● ●●	문경시 ○○로 000-0	AN	△△△△과-31052(2019.9.26.)

또한 2018. 1.부터 2020. 1.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및 휴게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불참자 명단 등을 사단법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등으로부터 통보 받고도 미 이수한 영업자(74명)에 대해 14,800천 원의 과태료를 미부과 하였다.

[표 2] 식품위생교육 미 이수자 통보내역

업 종	문서제목	교육주관	미이수자	통보일
계		4개 교육기관	74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17년도 기존 및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현황 최종결과 보고	(사)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16명	2018. 1.
	2018년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교육이수결과 통보	(사) 한국식용유지고추 가공업협회	43명	2019. 2.
	2019년도 기존 및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현황 최종결과 보고	(사)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9명	2020. 1.
휴게음식점	2019년도 기존(보수)영업자 불참자 명단 통보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6명	2019. 12.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출입시간(09:00~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각각 영업정지 10일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문경시 ◇◇◇길 00에 소재한 ◆◆◆◆(대표자 AO)이 2020. 6. 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으로 적발되어 2020. 7. 15. 문경경찰서 ◎◎과로부터 아래 [표 3]과 같이 통보받은 공문(△△△△과에서 이송)을 접수만 한 채 2021. 3. 3.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미이행 하였다.

[표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적발 통보내역

구 분	적발일시	상 호	주 소	대표자	공문접수 문서번호
문경경찰서 (◎◎과-3267)	2020.6.20. 01:00경	◆◆◆◆	문경시 ◇◇◇길 00	AO	△△△△과-22400(2020.7.15.) ▲▲▲▲과-10177(2020.7.15.)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읍, ▼▼면, ◁◁면
내 용

문경시에서는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배수시설 준공검사 업무를 각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소로 부과 요청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일정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읍면에서는 ○○○○○과로부터 배수시설 협의가 오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소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읍, ▼▼면, ◁◁면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배수설비 협의 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아래 [표] 건축물에 대하여 ◆◆◆◆◆소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 요청을 하지 않은 채 배수설비 수리 후 ○○○○○과로만 회신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하수도특별회계 재원) 235,054천 원이 미부과 되었다.

[표] ◆◆◆◆◆소 미통보로 인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부과 내역

읍면	건축주	배수설비 협의요청일	오수발생량 (10m³/일)	미부과금액(원)	○○○○○과 회신일
				235,054,620	
▽▽읍	(주)○○○○○	2019. 4. 1.	29.64	37,922,350	2019. 4. 1.
▼▼면	☆☆☆☆ (●●●●과)	2020. 9.23.	14.8	18,929,200	2020. 9.24.
	□□□□□□□□	2020.11.16.	123.69	158,186,720	2020.11.16.
◁▷면	(주)■■■■■■■	2021. 1. 4.	54.43	20,016,350	2021. 1. 4.

※ 2017~2020 전체 54건 중 50건 1,734,685천 원 부과, 4건 235,054천 원 미부과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부과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235,054,620원)은 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제한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2019. 10. 29. ○○면으로부터 AP 외 8인의 문경시 ○○면 ●●리 000번지 내 단독주택 건축신고(신축)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를 요청받아 2019. 11. 11. [표]와 같이 농지전용을 허가(협의)하였다.

[표] 문경시 ○○면 ●●리 000번지 내 단독주택 부지 농지전용허가(협의) 내역

연번	신청인		접수일	허가일	허가면적 (㎡)	비고
	성명	주소				
1	AP	○○면 ◇◇◇◇길 0	2019. 10. 28.	2019. 11. 11.	581	생산관리 지역
2	AQ	○○면 ◆◆◆길 00	"	"	464	
3	AR	"	"	"	455	
4	AS	"	"	"	691	
5	AT	"	"	"	795	
6	AU	"	"	"	885	
7	AV	"	"	"	647	
8	AW	"	"	"	681	
9	AX	○○면 ◆◆◆길 00	"	"	830	
합 계					6,029	

「농지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 지역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1,000㎡를 초과하여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7년 농지업무편람」 제6장 제2절²⁾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1필지)를 같은 종류의 시설³⁾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 면적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AP 외 8인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⁴⁾를 살펴보면 AP 외 8인이 생산관리 지역인 문경시 ○○면 ●●리 000번지 농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 소유자 농업회사법인□□□□□□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하였고, 각각의 농지전용 신청면적을 합산하면 6,029㎡에 달하였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AP 외 8인의 농지전용(협의) 신청은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농지전용 신청면적을 합산하면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전용 제한면적(1,000㎡)을 초과하므로, AP 외 8인에게 문경시 ○○면 ●●리 000번지 농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전용을 허가(협의)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토지소유자 농업회사법인□□□□□□이 AP 외 8인에게 소유권을 이전⁵⁾하고 토지를 분할⁶⁾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2019. 11. 8. AP 외 8인에게 문경시 ○○면 ●●리 000번지 농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전용을 허가(협의) 하였다.

2) 「2017년 농지업무편람」 P.260 <참고사항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관련>

3) 같은 종류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분류에 의한 시설

4) ○○면-10414~10422(2019.10.29.) 실무종합심의회 검토의뢰서 9건에 첨부

5) 2017년 농지업무편람(p.77)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2016. 4. 22.) 내용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를 제3자에게 주택부지 등 농업경영 이외의 용도로 전용허가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어 농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부합하지 않고, (중략)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벗어나는 목적으로 토지사용 승낙이 제한되므로 해당 농지를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되어 있음

6)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제3호 및 [별표 25]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그 결과 AP 외 8인에게 전용 제한면적을 초과하여 농업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농지의 보전 및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연접지역 개발행위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시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 등)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1. 가목에 따르면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 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동일인⁷⁾이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7) 「은행법」 제2조 제8호 : “동일인”이란 본인 및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기 허가받은 지역의 사업자와 추가로 신청한 사업자가 동일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면 ◆◆리 ㄱ, ㄴ, ㄷ 개발행위허가 건

2017. 2. 17. AW가 ◇◇면 ◆◆리 607, 668 일원 7,297㎡(계획관리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9. 3. 12. AW 외 1인이 ◇◇면 ◆◆리 ㄱ, ㄴ, ㄷ 일원 5,612㎡(계획관리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AW 등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2017. 2. 27. AW가 개발행위허가 받은 ◇◇면 ◆◆리 ㄸ, ㅈ 일원 7,297㎡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부지와 2019. 3. 12. AW 외 1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면 ◆◆리 ㄱ, ㄴ, ㄷ 일원 5,612㎡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부지는 직선거리 5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2017. 2. 17. AW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과 AW 외 1인⁸⁾이 2019. 3. 12.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면적을 합산하면 12,909㎡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10,000㎡)보다 2,909㎡를 초과하였다.

[표 1] 문경시 ◇◇면 ◆◆리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내역

연번	신청인	신청 내역				허가일	비고
		신청일	사업부지	부지면적 (㎡)	용도지역		
합 계				12,909			
1	AW	2016. 11. 30.	◇◇면 ◆◆리 ㅅ, ㅈ	7,297	계획관리 지역	2017. 2. 27.	
2	AW 외1	2019. 3. 12.	◇◇면 ◆◆리 ㄱ, ㄴ, ㄷ	5,612		2019. 4. 22.	

8) AW 2,746㎡(◇◇면 ◆◆리 ㄴ, ㄷ), AZ 2,866㎡(◇◇면 ◆◆리 ㄱ)

한편 2019. 3. 18. ▷▷과에서는 AW 외 1인의 ◆◆리 ㄱ, ㄴ, ㄷ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과 등 관련 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하였고, 2019. 3. 19. ♠♠♠♠과로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미만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붙임]9)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과-9290, 2019. 3. 19.) 받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 3. 12. AW 외 1인의 ◇◇면 ◆◆리 ㄱ, ㄴ, ㄷ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부지와 직선거리 50m 이내에 동일인인 AW가 2017. 2. 27.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과에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2. ▽▽읍 □□리 ㄹ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건

2016. 4. 12. BA가 ▽▽읍 □□리 ㄱ, ㄴ 일원 4,677㎡(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8. 7. 27. BC가 ▽▽읍 □□리 ㄹ 일원 3,997㎡(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BA와 BC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BA와 BC의 연락처가 010-▮▮▮-▮▮▮로 되어 있고, BC의 연락처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읍 □□리 ㄱ, ㄴ, ㄹ의 소유자가 모두 BC로 되어 있어 BA와 BC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동일인에 해당된다.

[표 2] 문경시 ▽▽읍 □□리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내역

연번	신청인 (연락처)	신청 내역				허가일 (준공일)	비고 (연락처)
		신청일	사업부지	부지면적 (㎡)	용도지역		
합 계				8,674			
1	BA	2016. 3. 2.	▽▽읍 □□리 ㄱ, ㄴ	4,677	보전관리 지역	2016. 4. 12. (2016. 5. 31.)	배우자
2	BC	2018. 7. 27.	▽▽읍 □□리 ㄹ	3,997		2018. 8. 30. (2021. 1. 13.)	

9) ♠♠♠♠과-9290(2019. 3. 19.) [붙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1 및 11의2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BA의 2016. 4. 12. ▽▽읍 □□리 □, ▢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허가 면적과 2018. 7. 27. BC의 ▽▽읍 □□리 □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허가 신청 면적을 합산하면 8,674m²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5,000m²)보다 3,674m²를 초과하였고, BA와 BC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부지는 직선거리 50m 이내에 위치해 있었다.

한편 2018. 8. 10. ▷▷과에서는 ▽▽읍 □□리 □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과 등 관련 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하였고, 2018. 8. 14. ♠♠♠♠과로부터 보전관리지역 내 사업계획 면적이 5,000m² 미만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업자 또는 동일인이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 및 승인 등을 신청한 지역과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BC의 ▽▽읍 □□리 □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부지와 직선거리 50m 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준공되어 있었는데도 ♠♠♠♠과에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그 결과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지 못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할 기회를 일실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소환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신고 수리업무 및 법령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같은 법 제21조 제1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같은 법 제21조 제11항을 위반한 자는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업정지 처분으로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과징금처분이 가능하며, 특히 동일한 위반 행위는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버스 내 가무행위”에 대한 위반사항 3건을 경상북도지방경찰청(○○○○과)에서 통보받은 후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사업자에게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1번 ◇◇◇◇의 경우는 “교통안전 우수업체로 인정된 사실을 참고하여 처분 감경”을 의견제출(2018. 1. 4.)한 사실에 대하여 감경요건 등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운행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번, 3번의 ◆◆◆◆◆의 경우는 “전세버스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처분을 감경하여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2018. 4. 20.)받고, 이에

대하여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행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90만 원을 각각 처분한다”고 검토한 후 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2018. 4. 23.) 당시 문경시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5개 업체로 총 68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적발된 운수사업자는 15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부당하게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하였다.

[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연번	처분일	대표자	회사명(차량대수)	차량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고
계		3명					
1	2018.1.5.	BD	◇◇◇◇(10대)	ㄱ	버스 내 가무행위	운행정지 15일	감경
2	2018.4.23.	BE	◆◆◆◆◆(15대)	ㄴ	"	과징금 90만 원	"
3	"	"	"	ㄷ	"	"	"

※ 2018. 4월 현재 문경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5개 업체 68대의 버스를 보유.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집행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읍읍과
 내 용

문경시 읍읍과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사업자인 (재)●●●●●●●●에 [표]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축제를 추진하였다.

[표] ○○○○○○○○축제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행사기간	보조금 지원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2017	4.29. ~ 5.7.	1,400	400	400	600	
2018	4.28. ~ 5.7.	1,000	200	200	600	
2019	4.27. ~ 5.6.	940	270	270	400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5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의 경우,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 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으로 보조단체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한편 (재)●●●●●●●●에서는 2018년 축제 진행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공고문에 예산금액으로 200,000천 원(부가세포함)을 명시하여 2개 업체가 각각 191,214천 원, 195,173천 원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거쳐 대행사를 선정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320,000천 원으로 하고 이를 최종 지급하였다.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계약체결일 전일(2018. 4. 15.) 재단의 계약 체결 시행문을 확인하면서 계약체결하려는 금액이 공고문의 예산금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변경되는 사업량과 내용 및 예산금액에 대해서 재공고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으나 그대로 결재하여 계약이 진행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등록,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4. 10. 문경경찰서로부터 [표]와 같이 청소년 게임제공업체 “◇◇◇◇”에서 2018. 2월경부터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위반사항 통보를 받았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2018. 10. 2. “◆◆◆◆◆◆”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체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등급과 다르게 개·변조한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제공하였다는 위반사항을 문경경찰서로부터 통보 받고 검찰로부터 수사 중이라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미루었으나 2019. 1. 28. 벌금 3백만 원의 법원 판결로 위반행위가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해야 하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표]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

업체명	소재지	위반일	위반사항	비고
◇◇◇◇	문경시 ○○로 00	2018. 2월경	경품 지급하여 사행성 조장	경찰 통보 접수일 2018.4.10.
◆◆◆◆◆◆	문경시 ●●●길 0	2018.4월경 ~ 6월경	등급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기 40대 설치 제공	경찰 통보 접수일 2018.10.2.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관내 특정토양오염대상관리시설의 지도·점검, 설치·변경신고 및 토양오염도 검사, 그리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미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¹⁰⁾”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2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0)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1·2·3·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또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관할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11조 제2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같은 지침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매년 2월 말까지 관내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2020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표 1]과 같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대상의 허가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 토양오염 시설의 지도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지도점검 명세

(단위 : 업체수)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점검대상	점검실시	점검대상	점검실시	점검대상	점검실시	
계	79	0	74	0	71	0	
주유소	43	0	43	0	42	코로나 19로 인한 미시행	
산업시설	10	0	7	0	7		
기타시설	26	0	24	0	22		

※ 자료 : ♠♠♠♠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지도점검 내역 재구성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의제처리 부적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르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는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문경소방서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주유취급소 지위승계사항, ○○○○○○과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지위승계 통보 사항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의제사항이 아니어서,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해 의제처리(12건) 하였다.

또한 [표 2]와 같이 12건의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해서는 문경소방서의 지위승계 대상 통보, ○○○○○○과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수리 알림 등 전자문서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사항을 인지하여 의제처리 하였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

[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수리 명세

연번	대상명	변경일자	신고	변경내용	신고증	비고
1	■■■■■	2018.1.4.	의제처리	대표자변경	미발급	
2	□□□□□	2018.12.13.	의제처리	대표자변경	미발급	
3	■□■□■	2019.8.16.	의제처리	대표자변경	미발급	
4	(주)■■■■■■■■	2019.8.28.	의제처리	폐쇄신고	미발급	
5	■■■■■■■■■■	2019.12.31.	의제처리	대표자변경	미발급	
6	■■■■■■■■■■	2020.1.3.	의제처리	대표자변경	미발급	
7	(주)■■■■■■■■■■ ■■■■■■	2020.1.9.	의제처리	상호 및 대표자변경	미발급	
8	■■■■■■■■■■	2020.2.5.	의제처리	휴업신고	미발급	
9	■■■■■■■■■■	2020.6.19.	의제처리	대표자변경 및 휴업신고	미발급	
10	■■■■■■■■■■	2020.8.12.	의제처리	대표자변경	미발급	
11	■■■■■■■■■■	2020.8.18.	의제처리	상호변경	미발급	
12	■■■■■■■■■■ ■■■■■■■■	2020.9.17.	의제처리	대표자변경	미발급	

※ 자료 : 문경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수리 내역 재구성

3. 토양오염검사 사후실시 대상 변경신고 처리 부적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수리를 하려면 토양오염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데도, [표 3]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토양오염검사현황과 같이 (주)■■■■■■■■ 등 3개 시설의 변경신고를 의제처리하면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토양오염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변경신고가 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토양오염검사 미 실시 대상 명세

연번	대상명	변경일자	사유	토양오염검사	과태료	차수	비고
1	(주)■■■■■■■■	19.8.28.	시설폐쇄	19.9.24.	미부과	1차	기한초과
2	(주)■■■■■■■■ ■■■■■■	20.1.9.	대표자변경	20.1.21.	미부과	1차	기한초과
3	■■■■■■■■ ■■■■■■	20.9.17.	대표자변경	20.11.16.	미부과	1차	기한초과

※ 자료 : 문경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내역 재구성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토양오염도검사 변경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을 기입하여 신고증을 재발급 하시기 바라며(시정),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 사 현 황

공 사 명	사업량	총공사비 (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회사	비 고
◆◆◆◆◆◆◆◆ ◆◆ 조성사업	◇◇◇◇◇ 조성 1식	8,304	19.12.12.	19.12.19. ~ 21. 7.29.	◆◆◆◆(주) BF	

1. 임시침사지 설치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 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2020. 9. 21. 행정협약(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성평가) 완료하여 공사 시공 중지해제 후 사업을 실제 착공하면서 임시침사지 및 세륜·세차시설, 공사 진·출입구 등의 위치가 설계서와 다른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행하였다.

2. 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건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적		품질기술인 배치기준
			기준	현장설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100억 원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20㎡이상	18㎡	초급1명 이상 (교육을 이수한자)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9. 12. 19. 공사 착공 전 승인 받은 [표 2]의 시험실 면적(20㎡이상)을 확보하지 않았고, 품질기술인을 배치기준에 따라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나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6절 5호 나에 따르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계약금액의 정산항목 및 규정

정산항목	관 련 법 령
국민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국민연금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퇴직공제부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을 산출하면서 조정기준일(2020. 9. 1.) 당시 공정예정표 상 기 시공된 공종(현장사무실, 창고, 품질시험실)임에도 제외하지 않고 142천 원만큼 과다 계상하였으며,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에 대한 물가 상승분 12,315천 원을 과다 계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임시침사지, 세륜·세차시설, 공사진·출입구 등의 설치가 일치하도록 설계변경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험실의 면적(20m²이상)을 확보하여 추가설치 하시기 바라며,(시정)
- ④ 과다 계상된 사업비 12,457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 사 현 황

공 사 명	사업량	총공사비 (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회사	비 고
▲▲▲▲▲ ▲▲ ▲▲ 조성사업	◇◇◇◇◇ 00가구	6,004	20.05.27.	20.05.27. ~ 22.05.18.	(주)■ ■ ■ ■ ■ BG	

1. 사토처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 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2020. 10. 28.부터 실제 사토처리를 하면서 토사와 리핑암 추정선이 설계서와 맞지 않아 흙깎기 수량(토사:62,885m³→81,433m³, 리핑암:127,473m³→109,796m³)이 변경되었는데도 17,312천원을 감액하지 않았고, 사토 운반거리(5km→3.3km)가 변경되었는데도 237,888천원을 감액하지 않는 등 설계변경 하여 총괄 공사비 255,2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성준공(2021. 1. 12.)을 하였다.

2. 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m²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건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분류	공사규모	시험장비	시험실 면적		품질기술인 배치기준
			기준	현장설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100억 원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20m² 이상	미설치	초급1명 이상 (교육을 이수한자)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2020. 5. 27. 공사 착공 전 승인한 [표 2]의 품질시험실(20m²이상)을 확보하지 않았고, 품질기술자를 배치기준에 따라 현장에 배치하고 상주시켜야 하나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축중기 설치 부적정

「도로법」 제77조, 같은 법 제10조, 「건설공사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르면 도로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 및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의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는 축중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2020. 4. 20. 사업을 발주할 시 설계서에 사토운반 물량이 167,559m³나 되는데도 축중기를 설계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아 정확한 사토물량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설계도서와 맞지 않은 흙깎기 수량, 사토 운반거리 등을 조정하여 사업비 255,200천 원 (제경비 포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배치기준(초급기술자)에 맞는 품질기술인을 고용하여 배치하시고, 시험실(20m²이상)을 설치하시기 바라며,(시정)
- ④ 축중기를 설치하여 나머지 사토물량 반출 시 데이터 자료 등을 전산보관하시고 공사 준공 시 제출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 ○○○○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을 추진하였다.

[표] 사 업 현 황

용 역 명	차수	추정사업비 (백만 원)		발주금액 (천 원)	총 용역비(천 원)			용역기간	용역회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 ○○○○ ○○○○○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차	4,000	2,100	199,919	170,354	99,330	감71,024	18.05.31. ~ 19.02.25.	(주)■■■■■■■ BH
	2차	2,400		214,445	172,000	-		19.12.18. ~ 20.07.27.	□□□□□□□ □□□□□□□□ BJ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용역의 설계 변경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위 [표]와 같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당초 동일한 사업구역(총 예정사업비 58억 원)에 대하여 전체 사업구역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용역을 수행 중 과업구역을 변경하여 1차, 2차 용역으로 분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용역비 100,976천 원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증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건축물 내화구조 부적정

문경시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 증축공사 기본 및 설계용역”을 2018. 1. 16. ‘□□□□□□□□ 대표 BK’과 계약하고 2018. 3. 2. 완료하였다.

[표 1] 용역 현황

(단위:천 원)

용역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동 000번지	실시설계 용역 1식 (78.30㎡ 증축)	13,500	2018.1.16.	2018. 1. 18.~ 2018. 3. 2.	□□□□□□□□ (BK)

가. 설계용역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계약문서 중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설계지침 일반사항”에 “수급자는 관련 주요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필히 검토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규정에 맞지 않는 경량철골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설계 도서를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설계 도서를 요구하지 않고 2018. 3. 2. 설계용역을 준공하였다.

나. 공사감독 부적정

[표 2] 공 사 현 황

(단위:천 원)

용역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증축공사	○○동 000번지	건축공사 1식	99,286	2018.4.11.	2018. 4. 11.~ 2018. 7. 5.	주식회사  BM

「공사감독자업무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감독자는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 소속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은 주요구조부가 경량철골구조로 되어있을 시 내화구조에 적합한 형식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2018. 7. 16. 공사를 준공하였다.

다. 건축협의 처리 부적정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한편 문경시 ♥♥♥♥과에서는 상기 사업의 건축협의를 2018. 3. 28. ○○○○○과로 요청하였고,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세움터 상 2018. 3. 27. 접수하여 검토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에 미달 되는 경량철골조로 설계되었음에도 2018. 4. 12. 건축협의 처리하였다.

[표 3] 건축(증축) 신고 현황

허가(신고) 번호	대지위치	용 도	건축주	협의일	내용	위 반 내 용
2018-○○○○○○과 -▲▲▲▲▲-0	○○동 000	업무시설	문경시	2018.4.12.	증축 78.30㎡	내화구조 미설치 (경량철골조설치)

2. 건축물 권리보전 조치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문경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재산관리 총괄자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문경시 ♥♥♥♥과는 ▄▄▄▄▄▄▄▄▄▄ 78.30㎡를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건축물의 재산관리자로 지정되었으며, 증축공사 사업완료 후 60일 이내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는 하였으나(2018. 8. 21), 감사일 현재까지 권리보전에 필요한 등기 조치를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법」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설계한 □□□□□□□□에 대하여 「건축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 ◆◆◆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2019. 11. 22. ●●●● 주식회사(대표 BP)와
 공사계약(642,169천 원)을 체결하고, ◆◆◆◆◆ ◆ ◆◆ ◆ ◆◆◆ 신축공사를
 2019. 11. 27. 착공하여 2020. 3. 9. 준공하였다.

[표 1] 공 사 현 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 업 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 ◆◆ ◆ ◆◆◆ 신축공사	제2종근린생활시설 295㎡ 신축	2019.11.27. ~ 2020.3.9.	959,789	761,778 (변경)	198,011 (변경)	●●●● 주식회사 BP	

1. 공사하도급 계약 관리 부적정

문경시에서는 자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등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받아 이를 심사 및
 승인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을 관리하고 있다.

[표 2] 하 도 급 현 황

(단위:천 원)

계약일자	공사명	계약 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업체	건설업면허	하도급율
2019.12.12.	◆◆◆◆◆ ◆ ◆◆ ◆ ◆◆◆ 신축공사	162,250	137,910	주식회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85%

가. 전문공사 미등록 업체 하도급 계약 승인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때에는 하도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 금액, 하도급률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문경시 ○○○○○과에서는 상기 “◆◆◆◆◆ ◆ ◆◆ ◆ ◆◆◆ 신축 공사” 착공 후 2019. 12. 17. 하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을 도급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통보받았고,

하도급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전문면허 등록 업체로써 하도급 계약 공정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되는 철골공사(정당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는 시공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되는 철골공사를 전문면허를 등록하지 못한 자격미달의 업체가 시공하게 되어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추후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하도급 계약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에 대한 관리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하도급 계약 내역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 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에도 ●●●● 주식회사는 상기 3개 항목에 대한 비용 2,661천 원을 미반영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문경시 ○○○○○과에서는 하도급 계약 건을 검토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2. 공용건축물 협의 미이행

[표 3] ◆◆◆◆◆ ◆ ◆◆ ◆ ◆◆◆ ▶▶▶ 공사 추진현황

(단위 : 천 원)

계약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착공일	준공일	건축협의 여부
◆◆◆◆◆ ◆◆◆◆◆ ▶▶▶ 공사	문경시 ◇◇면 △△리 000-0	▶▶▶ 증축 (6.98㎡)	'20.4.1.	'20.4.6.	부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착공 전 허가권자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준공 후 방풍실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건축연면적이 증가되어 사전에 증축 협의를 했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맞지 않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